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

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교육은”을 “교육(검정시험을 포함한다)은”으로, “이수”를 “이수,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로 한다.

제3조(「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6조(「약사법 시행령」의 개정)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 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8회 이내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할당대상업체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

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 받은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조정 및 중재 비용의 분담)”을“(조정 및 중재 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2조의4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기한의 연장은”을 “납부기한의 연기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한다.

제12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과징금 납

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분할납부를”을 “분할 납부를”로, “분할납부의”를 “분할 납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3조(「화장품법 시행령」의 개정)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분할납부의”를 “분할 납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생략)	제1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 납부해야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제1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u>교육은</u>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u>교육과정 이수</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생략)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교육(검정시험을 포함한다)은</u> ----- ----- ----- <u>이수, 교육비 및 검정시험 수수료</u> -----. ③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제59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 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가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 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 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 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 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 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제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 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생략)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u>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u>	②----- ----- ----- ----- -----, <단서 삭제>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 ----- ----- ----- --.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삭 제> ⑥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 ----- -----. <삭 제>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	--	--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5(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1.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 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4.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 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삭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과징금) ① ~ ③ (생략)	제51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8회 이내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8회 이내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의 손실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경우	2. 사업의 손실로 인하여 경영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납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납부

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과징금의 납부
를 유예하거나 과징금을 분할하
여 납부하도록 했음에도 그 할
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납
부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취소하
고, 그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기
간 중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분할납부할 과징금을 분할납
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
구하고 그 할당대상업체가 「행
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
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신설>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이 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 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 인을 요청받은 경우 중고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려는 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의 분담) <신설> (생략)	제16조(조정 및 중재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한 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④ (생략)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제92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행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
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
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
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
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
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
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과
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
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
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 ③ ----- 납부기한의 연
기는 -----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 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

③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분할 납부를 -----

----- 분할 납부의 -----
-----.

<삭 제>

<u>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u> <u>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u> <u>되는 경우</u>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u>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u> <u>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u> <u>경우</u>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제1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즉시 한꺼번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분할 납부하게 ----- ----- ----- 분할 납부의 ----- -----. <삭 제>		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담보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연 락 처	(044) 200 - 6741